

법령Ⅱ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‘과학기술자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대상자원이 되고 60세가 되는 날에 대상자원에서 제외된다.
- ④ 외국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‘자격을 취득한 사람’에 포함되지 않는다.

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,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.
- ②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지침은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으로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작성한다.
- ④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은 물론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도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.

문 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집행계획은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, 자원의 조사·지정 등에 관한 사항,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
- ④ 시행계획의 수립권자는 그 계획 중 다른 계획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4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·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자에게 조사 또는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(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)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필요한 사항의 신고는 업체의 장뿐만 아니라 인력자원대상자에게도 하게 할 수 있다.

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주무부장관이 한다.
-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거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.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이 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, 그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.

문 7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훈련의 실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㉠ ~ ㉣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(㉠)이(가)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하여 (㉡)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-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(㉢)이(가)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하여 (㉣)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
- | ㉠ | ㉡ | ㉢ | ㉣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① 국무총리 | 대통령 | 국무총리 | 대통령 |
| ②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 주무부장관 | 국무총리 |
| ③ 시·도지사 | 국무총리 | 국무총리 | 대통령 |
| ④ 국무총리 | 대통령 | 주무부장관 | 국무총리 |

문 8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- ㄴ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
- ㄷ.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
- ㄹ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ㄱ, ㄴ | ② ㄴ, ㄹ |
| ③ ㄱ, ㄷ, ㄹ | ④ ㄴ, ㄷ, ㄹ |

문 9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」상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정부연습은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없다.
-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·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④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문 10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도상훈련의 기간은 연(年) 7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.
- ③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.
- ④ 동시관리훈련은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.

문 1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②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인력훈련 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고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교부한다.
- ③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④ 동시관리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식비·숙박료·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.

문 1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공유(公有)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훼손된 경우, 주무부장관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그 소유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- ②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- ③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 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,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 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.
- ④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무총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